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2013나71687, 2013나71694(병합)]

【전문】

【원고(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휴먼패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크라운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14853, 2012가합2333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4. 6. 19.

【주문】

- 1.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진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진에 대한 부분(도메인이름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진은,
- (개) 별지1 목록 1, 2, 3 기재 표장을 유전자검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별지1 목록 1, 2, 3 기재 표장을 유전자검사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 (다) 별지1 목록 1, 2, 3 기재 표장이 표시된 유전자검사업에 관한 광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서 별지1 목록 1, 2, 3 기재 표장을 제거하라.
-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진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진이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2, 피고 3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부담한다.
- 5.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 ㈜크라운진(이하, '㈜'는 생략한다),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포함하는 문자를 도메인이름(키워드 방식의 도메인이름 포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참가인은 ㈜가비아에 2008. 2. 28.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가비아는 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불과하여 참가인 주장의 도메인이름이 ㈜가비아에 등록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상표법 67조의2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항소취지[참가인]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패소 부분(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 제외)과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4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가인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피고 크라운진] 제1심판결 중 피고 크라운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 ㈜크라운진(이하, '㈜'는 생략한다),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포함하는 문자를 도메인이름(키워드 방식의 도메인이름 포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 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 라{참가인은 ㈜가비아에 2008. 2. 28.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가비아는 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불과하여 참가인 주장의 도메인이름이 ㈜가비아에 등록된 것으로 보 이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참 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상표법 67조의2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 였다).항소취지[참가인]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패소 부분(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 제외)과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4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 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가인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피 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피고 크라운진] 제1심판결 중 피고 크라운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 ㈜크라운진(이하, '㈜'는 생략한다),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포함하는 문자를 도메인이름(키워드 방식의 도메인이름 포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 라{참가인은 ㈜가비아에 2008. 2. 28.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가비아는 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불과하여 참가인 주장의 도메인이름이 ㈜가비아에 등록된 것으로 보 이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참 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상표법 67조의2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 였다).항소취지[참가인]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패소 부분(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 제외)과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4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 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가인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피 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피고 크라운진] 제1심판결 중 피고 크라운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 ㈜크라운진(이하, '㈜'는 생략한다),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포함하는 문자를 도메인이름(키워드 방식의 도메인이름 포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 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 라{참가인은 ㈜가비아에 2008. 2. 28.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가비아는 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불과하여 참가인 주장의 도메인이름이 ㈜가비아에 등록된 것으로 보 이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참 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상표법 67조의2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 였다).항소취지[참가인]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패소 부분(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 제외)과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4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 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가인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피 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피고 크라운진] 제1심판결 중 피고 크라운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당하는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 ㈜크라운진(이하, '㈜'는 생략한다),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포함하는 문자를 도메인이름(키워드 방식의 도메인이름 포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 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 라{참가인은 ㈜가비아에 2008. 2. 28.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가비아는 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불과하여 참가인 주장의 도메인이름이 ㈜가비아에 등록된 것으로 보 이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참 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상표법 67조의2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 였다).항소취지[참가인]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패소 부분(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 제외)과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크라운진은 별지1 목록 4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장을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검사결과지,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에 표시, 전시 또 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표장이 표시된 같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감정서, 거래서류, 간판 또는 명함을 폐기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 생략)에 표시된 같은 표장을 삭제하라. 피고 2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가인에게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생략)"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피 고 크라운진, 피고 3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피고 크라운진] 제1심판결 중 피고 크라운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 1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 가. 사안의 개요
- 이 사건은 유전자검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피고 크라운진과 그임원인 피고 3, 피고 2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유전자검사업을 운영하고, 피고 2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같은 도메인이름인 "(도메인이름 생략)"을 등록하여 피고 크라운진의 영업에 관한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권의 침해금지청구권과 예방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 크라운진, 피고 2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유전자검사업 등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 크라운진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광고 등의 금지 및 그 침해조성물의 폐기를 구하며, 피고 2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 1억 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사안이다.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서비스표권을 이전받으면서 피고 크라운진,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서 권리승계 참가하였고,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심판결은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청구 중 일부(유사표장을 사용한 유전자검사업 등의 금지, 유사표장을 사용한 광고 등의 금지, 침해조성물의 폐기청구 부분)를 받아들이고,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 부분에 한정하고, 피고 크라운진이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상표법 67조의2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유】

- 1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 가. 사안의 개요
- 이 사건은 유전자검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피고 크라운진과 그임원인 피고 3, 피고 2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유전자검사업을 운영하고, 피고 2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같은 도메인이름인 "(도메인이름 생략)"을 등록하여 피고 크라운진의 영업에 관한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권의 침해금지청구권과 예방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 크라운진, 피고 2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유전자검사업 등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 크라운진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광고 등의 금지 및 그 침해조성물의 폐기를 구하며, 피고 2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 1억 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사안이다.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서비스표권을 이전받으면서 피고 크라운진,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서 권리승계 참가하였고,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 제1심판결은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청구 중 일부(유사표장을 사용한 유전자검사업 등의 금지, 유사표장을 사용한 광고 등의 금지, 침해조성물의 폐기청구 부분)를 받아들이고,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 부분에 한정하고, 피고 크라운진이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참가인의 피고 크라운진에 대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크라운진, 피고 3에 대하여 상표법 67조의2에 기초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 나. 전제된 사실관계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